

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4차 본 회의(2017.9.13.)

# 조례안·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# 목 차

1	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	5
4	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--	7
5	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9
6	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	11
7	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3
8	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5
9	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-----	17

#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7. 8. 22.
- 나. 발 의 자: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(6인)  
(공동발의: 이성복·이흥희·최광열·권재경·박희순 의원)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개정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완화로 축사 농가의 부담을 줄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한시적 완화함.(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)
  - 무허가 건축물 100분의 70 ⇒ 단, 무허가 축사인 경우 100분의 60 적용
  - ※ 한시적 적용 근거: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6호 규정  
⇒ 「가축분뇨법」 부칙(12516호, '14.3.24 및 환경부령 제599호, '15.3.25)
- 나.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사항 항목 추가함.(안 제42조의3제1항제2호)
  - 가설건축물 ⇒ 자진신고·천재지변·주민 공동소유 건축물 등 추가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 이행강제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제정이유

- 화재진압 구조·구호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목적을 정함.(안 제1조)

- 거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을 정함.

#### 나. 적용범위를 정함.(안 제2조)

-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각 읍·면 의용소방대에 적용함.

#### 다. 지원범위를 정함.(안 제3조)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지원
-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## 라. 포상에 관하여 정함.(안 제4조)

- 화재진압, 구조·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창군내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다만 예산집행 시 조례안 제3조제3호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, 또한 거창군 보조금 지원에 관련하여 처리절차, 방법 등은 별도로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제정이유

- 경상남도의 읍·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보완요청 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중복·재기재 사항 삭제함.

(안 제2조제4호, 제4조제3항, 제6조)

-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심의사항 삭제
- 군·읍·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
- 통합방위예규 적용 규정

- 나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조직개편사항 반영함.(안 제3조제2항제7호)

- 진주보훈지청장 ⇒ 경남서부보훈지청장

다.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함.(안 제4조제3항제2호)

-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
- 분야별 지원반: 총괄지원반, 동원지원반, 보급·재정지원반 구성
- ※ 경상남도의 시·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요청 사항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남도의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·재기재 사항 등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

#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상위법과 「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규정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재 기재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설시장의 명칭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.(안 제2조, 별표1)
- 나.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 정함.(안 제3조·제4조)
  - 시장을 사용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노점은 예외)
  -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사용제한 가능하다.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.(안 제5조)
- 라.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정함.(안 제6조·제7조, 별표2)
  - 사용료는 시장 개장일에 일액으로 징수

마.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정함.(안 제8조)

바. 법령의 중복·재기재 사항을 삭제(구 제2조~제6조, 제7조2항·제9조·  
제10조3항·제12조1항·제13조·제14조2항, 제15조~제19조, 제22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「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개정이유

-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,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함.(안 제12조)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호의 규모 이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

#### 나.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함.(안 제17조)

-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위임 없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삭제(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과제정비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방 화장실 규모를 완화하고,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 운영신고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·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, 조례로 위임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둠.(안 제2조)
- 나.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정함.(안 제3조)
- 다.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.(안 제4조)
- 라. 법령 불일치 및 중복·재기재 사항 삭제함.(구 제3조~제12조 )
  - 회계연도, 세입·세출,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, 금고설치, 자금의 전용금지,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, 예비비, 결산 및 보고 등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의 명확성과 설치근거를 적시하는 등 필요사항을 정비하고,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 2. 개정이유

-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,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인상함.(별표 2, 별표 4)
  - 요금 인상률 5퍼센트: 세제곱미터당 단가 754원 ⇒ 792원
- 나.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.(별표 7)
  -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 신설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부족분을 매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요금현실화가 2025년까지 정부 권장수준까지 미달되면 국고 페널티를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다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대해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

##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개정이유

-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한 요금 인상분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,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함.(안 별표 1)
  - 요금 인상률 5퍼센트: 세제곱미터당 요금 171원 ⇒ 179원
- 나.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.(안 별표 7)
  -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
- 다. 법령상 근거 없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,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.(안 제23조)

- 매월 청소실적 보고, 분뇨수거 요청 시 24시간 내 수거 삭제
- 분뇨수집·운반 대행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거창군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·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다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대해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8. 2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8. 2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9. 6.

### 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 및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.

### 3. 위탁개요

- 시설명: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
- 위치: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-7
- 시설현황

처리방법	시설용량	처리공정	비고
열분해가스화방식 (24시간)	30톤/일(1,250kg/hr)	1차연소실(열분해실)-2차연소실- 폐열보일러-반건식세정실-여과 집진시설-굴뚝	

- 위탁대상: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
- 위탁기간: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

- 선정방법: 공개 제안공모 후 평가에 의한 적격한 업체 선정
  - 소요예산: 1,547백만원 정도 / 년
  -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
    - 2008. 2월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완료(2013년까지 시공사 운영)
    - 2014. 1월~2017. 12월: 환경관련 업체 위탁대행 처리 중
    - 기존 통합관리대행에서 소각장부분 분리하여 관리
  - 향후일정
    - 2017. 9월: 의회 동의 및 위탁운영 계획공고
    - 2017. 10월: 참여업체 제안평가
    - 2017. 11월: 가액입찰 및 업체선정(협약서 협약 등)
    - 2017. 12월: 인수인계 절차진행 및 착수검토
    - 2018. 1월: 관리 및 운영
- ※ 위탁대상사무: 2018년부터 환경과(자원순환담당)로 이관 예정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창의성·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대행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,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르면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“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”은 민간 위탁 할 수 있지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르면 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“ 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거창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관련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